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36132 판결 [임차권확인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나3613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76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강국

피고, 피항소인 B대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창훈

변론종결 2023. 7. 6.

판결선고 2023. 8. 10.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76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임야 2,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1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없이 매년 말 차임 270,000원씩으로 정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조미옥, 판사 홍순욱

도면의 표시



